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년 7월 1일

나. 제안자: 김민석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22년 7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2.7.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민석 의원)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예술인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예술인 지원 사업 및 위탁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사. 위원의 임기,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1조)
- 아.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4조)
- 자. 예술인의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4조
-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1조

나. 협조부서: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2022. 7. 8. ~ 7. 13.) 결과: 의견 있음(붙임 참고)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광호)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나. 검토 내용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예술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 ‘예술인 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문화예술 종사자이거나 강서구 소재 문화예술단체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예술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예술활동의 증명)에 따라 저작물, 소득 등 양적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부여되며 **우리 구 예술인 활동증명 등록 현황¹⁾**은 전국 143,274명 중 5.35%인 2,856명임(2022. 7. 8. 기준)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을 구체화하고 그 사업이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1) 우리 구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현황(전국 143,274명 중 2,856명, 5.35%)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07.08. 기준]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회 설치)에 의하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설치가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을 살펴볼 때 우리 구 다른 위원회와 중복여부에 저촉되지 않는 등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총괄부서의 위원회 신설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안 예고 결과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 가능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음
 - 우리 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의 임기)에 의하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실행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5조는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를 후원하기 위한 예술인의 활동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예술인이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 구는 매년 ‘문화예술 행사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 자생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²⁾하고 있었으나 예술인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예술인 직종의 특성상 고용 불안정과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문화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예술인 복지 관련 강서구 2022년 예산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사업내용
1	염창문화예술창작 공간 운영	11	지역 내 예술인의 문화예술창작 활동 지원
2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	20	
3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	419	구립예술단체(합창단, 극단) 문화예술단체(문인협회 등 7개 단체)
총 액		450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에 연임 규정을 신설함

나. 수정내용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 를 “둘 수 있다” 로 한다.
- 제9조 본문 중 “2년으로 한다” 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붙임 수정대비표 참조)

※ 붙임 관계 법령 1부.

원 안	수 정 안
<p>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u>2년</u>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 <u>둘 수 있다.</u></p> <p>1. ~ 4. (원안과 같음)</p> <p>제9조(위원의 임기) ----- ----- <u>2년</u>으로 하며, <u>한 차례만</u> <u>연임할 수 있다</u> ----- ----- -----.</p>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4. 3. 28.>
4. 삭제 <2014. 3. 28.>
5. 삭제 <2014. 3. 28.>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16. 5. 3.>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의 구성 및 임기
4. 존속기한 및 예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문화체육과

의원발의 조례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직 위원 임기는 2년 으로하며 <u>연임할 수 있다...</u>	-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규정 명기 필요